

##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년 3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·운용계획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- 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보강코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토록 개정하기 위함(제3조제3항제5호)

### 3. 의안전문 : 불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### 5. 관계법령 : 불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」 [제정 2005. 12. 28 대통령령 제19197호]

첨 부 1. 의안전문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3. 관련법령 1부.

4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##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제6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심의 한다.</p> <p>1. ~ 2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————— <u>각 호</u> —————</p> <p>—</p> <p>1. ~ 2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구성) (생략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</p> <p>1. ~ 4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(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—————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</p> <p>1. ~ 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</u></p>
<p>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의 해촉) ————— <u>각 호</u>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 법령

### 관 계 법 령

#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제4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세계현금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[제정 2005.12.28 대통령령 제19197호]

제3조 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

제4조 (기금의 수입과 지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  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천시 공고 제2008 - 3호

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01월 02일

제천시장

###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조성 및 관리·운용계획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
- 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위원회를 보강코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토록 개정(안 제3조제3항)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, 단체나 개인은 2008년 0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(참조 : 경로재활팀장 ☎ 641-5712, FAX 641-572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다. 기타 참고사항
- ☞ 제천시청 주소 : 제천시 시청길 15(천남동 12-2) (우) 390-701

★지방행정주 사	경로재활팀장					

## 조례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및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### 1. 입법예고 조례명

- ▶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(안)
- ▶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08-2호, 제천시공고 제2008-3호

3. 공고기간 : 2008. 1. 2 – 1. 22(20일간)
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
6. 공고결과

- 조회수 : 92명
- 의견제시자 : 없음

불일 : 공고안 1부(별지). 끝

보고자 : 행정 6급 이 규 철

제천시장 귀하